



지게차 포크에서 작업 중 추락



재해개요

2024. 11. 00.(금) 00:00경 경기도 소재 00000(주) 옥외 폐기물 저장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위 팔레트에 적재된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팔레트가 포크에서 밀리며 몸 균형을 잃고 약 2.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함



발생원인

▶ 추락 원인

- (지게차 승차석 외 탑승)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포크의 팔레트 위에 탑승함
- (지게차 주용도 외 사용)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용도가 아닌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용도로 사용
- (추락 방지조치 미실시)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발판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음

예방대책

1 승차석 외 탑승 및 주용도 외 사용 금지

- 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게차 포크 등 승차석 외 탑승 금지
- 화물의 적재하역 작업 외의 포크 위에서 고소작업 등 작업 실시 금지

2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조치 실시

-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비계조립 등 작업발판을 설치
- 작업발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
-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적정 높이 및 강도의 안전대 부착 설비에 연결 후 작업

3 작업특성에 맞는 기능의 지게차 사용

- 취급 대상 물체의 재질, 형태, 크기 및 작업 내용에 따라 클램프 등 적합한 기능이나 용도의 지게차를 사용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